

인천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2533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안영길, 박요셉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2021. 8. 26. 자 금전증여계약을 53,357,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53,357,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 1) 원고는 2019. 6. 15.부터 2021. 8. 23.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10,000주 중 3,5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 2) 원고의 형인 F가 E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D은 2019년경 F와 사이에 D이 E의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7월경까지 E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운영하였다.
- 3) 피고 B는 D의 자녀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E 관련 세금납부고지

북인천세무서에서 2021. 8. 9. E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관하여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원고에게 총 72,506,350원의 세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이 2019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F로부터 E의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납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1. 8. 12. D과 사이에 D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대납약정에 따른 채무 중 일부만 이행하여, 원고가 부과된 세금 중 53,357,940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납약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53,357,940원을 가지고 있다.

다. D은 이 사건 대납약정 이후인 2021. 8. 26. 피고들에게 인천 미추홀구 G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 H호의 매수대금으로 금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약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인 53,357,9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시점 무렵 D과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납약정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존부 등 다른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영